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유전개발과 전민영 과장, 김정두 사무관(2110-5526)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일부 개정

-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 우대, 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등 -

□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음

□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시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 추가**

② 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자원개발 역량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시에도 **5%p 가점비율 추가**

* 최대 융자비율은 융자대상사업의 60%로,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ⅰ)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 등과 **동반진출사업**, (ⅱ)**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ⅲ)**실수요자**인 경우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음

③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 고려**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게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개선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누적손실로 인해 순적자가 되더라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특별부담금 부과취지와 배치

④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 및 감면시한 설정(2년) 등 **감면제도 보완**, 융자심사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 내실화** 조항 도입

<참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일부 개정안(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70호)

2010. 12.

지식경제부

※ 개정된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중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특별부담금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감면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융자심의회 운영과 심사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정하고, 현 고시 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융자’와 ‘대출’을 ‘융자’로 통일하며,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융자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 정리(제3조 등)

○ 현 고시상 ‘융자’와 ‘대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바, 용어를 ‘융자’로 통일

나. 특별부담금 납부시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을 비용공제(제10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산정은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융자제도 취지상 특별부담금은 융자원리금 상환과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사업수익금에서 운용비용을 공제하고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것인 바,

○ 운영비 미회수누적액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수익금에서 공제할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누적손실로 인하여 순적자가 되더라도 특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사업자의 누적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당해기간 순수익 범위내에서 투자금액을 결정하거나 투자금액 비용 미회수를 고려한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등 석유개발사업 투자의 사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석유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 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에 모순이 되므로 특별부담금 산정시 운영비 미회수누적액이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

다. 종료사업의 성공불융자금 감면 절차 규정(제21조 등)

○ 융자심의회 운영주체가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지식경제부(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로 이관됨에 따라 성공불융자원리금 감면 신청 방법과 감면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감면대상사업의 감면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채비율 저하, 부실채권 감소 등 건전성을 강화하게 하여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사업종료 또는 사업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 감면신청을 하도록 신청기한을 제한)

라. 융자대상사업과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관련 규정 등 신설(제22조의 3)

○ 융자대상사업과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현장실사의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규정은 세부기준에서 정함)

○ 융자심의회 운영, 융자 및 감면 심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마.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 지원(별표 2)

○ 중소기업 및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에 대하여 최대융자비율 중 5%p 가점 비율 추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융자원칙) ① (생략)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생략)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	제3조(융자원칙) ① (현행대로함)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현행대로 함)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10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제10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및 운영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20조(대출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대출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대출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대출신청인은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대출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③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출심사) ①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융자심사) ①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이하생략)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이하생략)	제22조로 이기
제20조의4(대출승인 및 통보) (이하생략)	제22조의 2로 이기

제20조의5(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제20조의3으로 조변경
제21조(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회계감사 실시사업의 회계감사보고서 ③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

	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감면심사) ①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감면신청액의 적정성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감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감면신청인에게 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제20조의3 이기> 제20조의3(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20조의4에서 이기>제20조의4(대출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또는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출대상 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융자대상 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 또는 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또는 감면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신설>	제22조의3 (사업의 관리) ① 융자대상사업의 관리 또는 감면대상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도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의 재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4조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다.
제23조 <신설>	제23조(위탁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위탁, 제22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융자심사와 감면심사 등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위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승인사항) (이하생략)	제24조로 조변경(이하생략)
제23조(재검토기한) (이하생략)	제25조로 조변경(이하생략)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특별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 시행일 이후 발생한 운영비 중 미회수 누적액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감면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 종료 또는 만료신고 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 가점비율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 10 %p	[별표 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 가점비율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 10 %p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 5 %p ④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 5 %p
[별표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제7조관련) * 가점비율	[별표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제7조관련) * 가점비율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 5 %p ③ 실수요자인 경우 : 5 %p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 5 %p ③ 실수요자인 경우 : 5 %p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 5 %p ⑤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 5 %p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table>
<tr><th colspan="3">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감면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자</td><td>1. 상 호</td><td></td></tr>
<tr><td>2. 대 표 자</td><td></td></tr>
<tr><td>3. 주 소</td><td></td></tr>
<tr><td rowspan="9">사업개요</td><td>4. 사 업 명</td><td></td></tr>
<tr><td>5. 사업구분</td><td>□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td></tr>
<tr><td>6. 사업지역</td><td></td></tr>
<tr><td>7. 대상광구</td><td></td></tr>
<tr><td>8. 계약상대자</td><td></td></tr>
<tr><td>9. 계약형태</td><td></td></tr>
<tr><td>10. 계약기간</td><td>200 . . ~ 20 . .</td></tr>
<tr><td>11. 공동참여지분</td><td></td></tr>
<tr><td>12. 사업 책임자</td><td>성명: 직위: 전화:</td></tr>
<tr><td rowspan="4">자금소요</td><td>13. 총사업비</td><td>U$ 천불</td></tr>
<tr><td>14. 한국측 부담액</td><td>U$ 천불</td></tr>
<tr><td>15. 신청인 부담액</td><td>U$ 천불</td></tr>
<tr><td>16. 감면 신청금액</td><td>U$ 천불</td></tr>
<tr><td colspan="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1조의2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자금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2">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회계감사 실시사업의 회계감사보고서</td></tr>
<tr><td colspan="3">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td></tr>
</table>